

주요 개정 내용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-332호(2021.12.23.) 관련 -

1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(2021.9.9.) “「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25호(2021.12.2.) “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”

2. 주요 개정 내용

○ 항목 확대 (총 12항목)

구 분	코 드	내 역
심사불능	SU-02	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증외상 영역 관련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
	SW-02	신포괄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료 산정 착오 또는 기재착오
심사조정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산정특례 및 시범사업 특정기호 미존재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정보시스템에 제출한 서식 내역 불일치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필수인력(전문의1명, 간호사1명) 신고 불일치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교육상담료 I 와 교육상담료 II 동시 산정불가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교육상담료 II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교육상담료 I, 환자관리료 외래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진료내역의 의사가 재택의료팀 전문의가 아니므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
구 분	코 드	내 역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교육상담료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환자관리료 산정횟수 초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	B	결핵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- 시범사업 수가 외 산정으로 조정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46호, 2021.9.9.)

3. 시행일자

-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